

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85

제출년월일 : 1996. 2. 5

제출자 : 조례정비특위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현재 고용직공무원은 경찰서에 파견 근무 중인 방범원들로 퇴직에 따라 정원이 자연 감소 추세로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의 삭제 또는 개정

2. 주요골자

- 병역복무 휴직자 복직임용에 관한 조항의 삭제 또는 개정(안 제9조)

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중 “소멸된 것으로 보며,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협원을 조정하여야 한다”를 “소멸된 것으로 본다”로 하여 제2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) 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부천시지방공무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·사업소 및 산하기관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(이하“휴직자정원관리 단위”라 한다)이라 하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 정원을 감안하여 부천시장이 조정 임용할 수 있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정원관리 단위기관의 고용직 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,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혼란을 조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)①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 제)</p> <p>②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소멸</p> <p>된 것으로 본다.</p>